

# 예산총칙

202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577,768,561	17,333,057
일반회계	529,213,932	15,876,418
특별회계	48,554,629	1,456,639
기타특별회계	48,554,629	1,456,639
지역발전특별회계	1,343,000	40,290
의료급여특별회계	132,461	3,974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75,732	11,272
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4,832,850	144,986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426,771	12,80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918,708	117,561
수질개선특별회계	37,105,979	1,113,17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19,128	12,57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12,431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1,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